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00 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 : 남인순 • 윤후덕 • 손명수

김현정・김 윤・이수진

위성락 • 이해식 • 김남근
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,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, 신호기·안전표지·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.

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"을 "제한·금지하거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 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1.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 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의 연장이 가능한 신호기
- 2. 속도 제한, 횡단보도, 기점(起點) 및 종점(終點)에 관한 안전표지

- 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- 4. 방호울타리
-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 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 역으로.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 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 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-제한·금지하거나 자동차등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----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 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 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 <신 설>

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 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1.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 도의 보행신호 시간의 연장이 가능한 신호기
- 2. 속도 제한, 횡단보도, 기점(起點) 및 종점(終點)에 관한안전표지
- 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 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
4. 방호울타리
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